

대구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311195(본소), 2018나311201(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에스

담당변호사 윤경진

변론 종결 2018. 10. 17.

판결 선고 2018. 11. 14.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6가단2793(본소), 2018가단 10100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주문 제1의 다.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7. 6. 10.부터, 경북 칠곡군 C 임야 569㎡중 별지 도면 2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114㎡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082원의, 위 D 임야 1,025㎡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570㎡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15,624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경북 칠곡군 C 임야 56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1 표시 11, 3, 4,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 지상 패널조 패널지붕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 5, 6, 12, 13,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9㎡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주택'이라고 한다), 위 D 임야 1,025㎡(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지붕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을 각 철거하고,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14㎡(이하 '제1점유부분'이라고 한다)와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570㎡(이하 '제2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각 인도하며, 47,036,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2. 18.부터 제1, 2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15,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47,036,0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점유부분에 관하여 2009. 5.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점유부분에 관하여

2009. 5.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F은 1912. 8. 5. 제1, 2토지를 사정받았고, 제1, 2토지에 관하여 F의 아들인 G은 1989. 4. 28.에 소유권보존등기를, G의 아들인 원고는 1989. 5. 17.에 '1989. 5.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E는 1992. 12. 5. 제1, 2토지와 경북 칠곡군 H 도로 2,836㎡ 지상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7.4㎡, 흙벽돌조 토기와지붕 단층주택 42.8㎡(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E는 제1점유부분에 있는 이 사건 창고 및 주택과 제2점유부분에 있는 이 사건 화장실을 각각 점유·사용하면서 그 부지 등으로 제1, 2점유부분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다. 제1, 2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하던 E는 2003.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창고, 주택, 화장실을 각각 점유·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제1, 2점유부분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 을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 1 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3. 7.경부터 이 사건 창고, 주택,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제1, 2점유부분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2006. 1. 29.부터 제1, 2점유부분에 관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주택,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제1, 2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며, 2006. 1. 29.부터 제1, 2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사용이익은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제1심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차임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점유부분의 2006. 1.29.부터 2017. 1. 9.까지의 차임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의 차임은 제1점유부분이 월 100,082원[= 1,138,644원×(366일/347일)÷12개월, 원 미만버림, 이하 같다], 제2점유부분이 월 415,624원[= 4,728,586원×(366일/347일)÷ 12개월]일 것으로 각각 추인된다.

기간		차임(원)		
시기	종기	제1점유부분	제2점유부분	합계
2006-01-29	2007-01-28	586,530	2,433,900	3,020,430
2007-01-29	2008-01-28	638,400	2,653,350	3,291,750
2008-01-29	2009-01-28	698,250	2,892,750	3,591,000
2009-01-29	2010-01-28	718,200	2,972,550	3,690,750
2010-01-29	2011-01-28	782,040	3,251,850	4,033,890
2011-01-29	2012-01-28	809,970	3,371,550	4,181,520
2012-01-29	2013-01-28	821,940	3,411,450	4,233,390
2013-01-29	2014-01-28	901,740	3,750,600	4,652,340
2014-01-29	2015-01-28	969,570	4,009,950	4,979,520
2015-01-29	2016-01-28	1,065,330	4,428,900	5,494,230
2016-01-29	2017-01-09	1,138,644	4,728,586	5,867,230
합계		9,130,614	37,905,436	47,036,050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제1, 2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는, 제1, 2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잘못된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서 마쳐져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제1, 2토지의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고의 제1, 2토지 소유권을 부인하려면 피고가 제1, 2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2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제1, 2토지가 위치한 경북 칠곡군 K리 일대가 해방 후인 1949년경 이재민들의 주거지로 활용되어 일명 'L'이라는 명칭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당시 국가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택 여러 채를 신축하여 이재민들에게 집을 제공하였는데, M,N 역시 1949년경 국가로부터 제1, 2점유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불하받은 후 1950년경 O에게 매도하였고, E가 1992년경 O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제1, 2점유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2003년에 E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제1, 2점유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제1, 2점유부분에 관한 E의 점유를 승계하여 제1, 2점유부분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O, E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9. 5. 17.로부터 20년간 제1, 2점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2009. 5. 17. 제1, 2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 2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E가 1992.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제1, 2토지에 있는 이 사건 창고, 주택, 화장실을 각각 점유·사용하면서 그 부지 등으로 제1, 2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E가 2003.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창고, 주택, 화장실을 각각 점유·사용하면서 제1, 2점유부분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2. 12.경부터 제1, 2점유부분을 점유하던 E의 점유를 피고가 2003. 7.경 승계하여 현재까지 제1, 2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2) 한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건물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 피고의 제1, 2점유 부분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2. 12. 5.에는 이미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E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E는 제1, 2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건축주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나 타인과의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그 건축허가신청 시에 타인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만 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뚜렷한바(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6240 판결 참조), E가 1992. 12. 5. 자신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인 제1,2토지와 경북 칠곡군 H 도로 2,836㎡를 부지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E가 위 각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E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그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만을 받았다면, E는 소유의 의사 없이 제1, 2점유부분의 점용권만을 얻겠다는 타주점유의 의사로 제1, 2점유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③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가 1949년경 제1, 2토지가 위치한 경북 칠곡군 K리 일대에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택 여러 채를 신축한 후 이재민들에 게 집을 제공하였다는 전제 하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지에 대규모 마을을 형성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설령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아니한 이상 그 협의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점용권만을 부여하는 내용에 불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포기 및 사용대차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제1, 2토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묵시적으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및 이용관계,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7, 10호증, 을3호증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묵시적으로 제1, 2점유부분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6. 9.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2017. 6. 9. 이전의 기간에 한하여 이유 있다.

① 제1, 2점유부분의 면적은 684㎡인데, 제1, 2토지에 관하여 1989.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G이나 1989.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가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684㎡라는 넓은 면적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람들(E,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 주택, 화장실의 철거나 제1, 2점유부분의 인도 또는 제1, 2점유부분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제1, 2토지가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제1, 2토지나 그 인근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다가 2016년 이후에야 원고로부터 철거 및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피고가 제1, 2토지를 증여받아 1989. 5. 17.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제1, 2토지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 2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P, Q가 원고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40016호, 같은 법원 2016가단40030호)에서 원고가 2017. 1.경 제출한 각 답변서(갑7호증, 을3호증)를 보면, '원고의 할아버지이자 제1, 2토지의 소유자였던 F이 1920년경 홍수 때문에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의 마음으로 우선 거처를 마련하도록 시혜를 베푼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2017. 6. 7.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가 약

50년 전부터 제1, 2점유부분을 아무런 법적 권원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1960년대 무렵 신축되어 증축, 개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이 사건 창고, 주택,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의 선대(F, G)들이나 원고가 제1, 2점유부분의 무상사용을 허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1992. 12. 5. 제1, 2토지와 경북 칠곡군 H 도로 2,836㎡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그 당시E는 원고를 포함한 위 각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가 제1, 2토지를 일부씩 점유·사용하는 것을 선대(F, G)의 뜻에 따라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이러한 원고의 묵시적 허용 하에 제1, 2점유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묵시적 허용은 민법상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해당한 다 할 것인데, 사용대주인 원고는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13조 제2항 참조),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대법원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이미 1960년대에 신축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경까지 약 50년이 넘도록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제1, 2점유부분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바로 피고가 제1, 2점유부분을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고가 측량감정과 차임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을

특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6. 9.에는 피고가 제1, 2점유부분을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 신청서에는 '설령 피고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지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2점유부분에 관하여 체결된 사용대차 계약은 2017. 6. 9. 원고의 사용대차 계약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가 제1, 2점유부분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을 주장하는 이상, 그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명시적으로 사용대차 계약 해지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를 상대로 제1, 2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설령 제1, 2점유부분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주택,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제1, 2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며, 2017. 6. 10.부터, 제1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0,082원의, 제2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15,624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위 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5. 17. 제1, 2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점유부분에 관하여 2009. 5. 17.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 2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위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주문 제1의 다.항)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본소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판사 곽용현, 판사 윤민욱